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30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차지호
이성윤 · 이춘석 · 문금주
안호영 · 안태준 · 이정문
문대림 · 김병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비롯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경영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농림·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9조).
- 다.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대한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 라. 농업·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
- 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 제111조).
- 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5).
- 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공하는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제한다”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⑧ ~ ⑩ (생략)

-----.

-----.

③ -----

-----2031년-----
1년-----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2031년-----

-----.

1. 2.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⑥ (생략)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2031년-----

⑤·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
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
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
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
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
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
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
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
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
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
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9

② -----

-----2030년-----

-----203
1년-----

1. (현행과 같음)

2. -----

가. 2031년-----2031
년-----

나. 2032년-----

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

세의 면제) ① -----

-----2031년-----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

-----2031년-----

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4. · 5. (생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2. (생략)

⑪ (생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 3. -----
-----2031년-----

4. · 5.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2031년-----
-----.

1. ·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2031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6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1. ~ 3. (생략)

⑨ (생략)

-----.

⑧ -----
-----2031
년-----

-----.

1.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